

2024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821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4	3,958,021	3,958,021	6,134,670	4,791,931	1,342,739		1,342,739	78.1
2023	718,314	718,314	971,245	935,470	35,775		35,775	96.3
2022	837,897	837,897	854,904	841,370	13,534		13,534	98.4

- 세입 예산현액은 39억 5,802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61억 3,467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중 47억 9,193만원이 수납되고 13억 4,27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이에 따른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78.1%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4	7,316,665						7,316,665	6,592,968	100,946	622,751 (8.5%)
2023	2,156,531						2,156,531	2,037,750		118,781 (5.5%)
2022	1,923,989	32,185		5,049			1,956,174	1,798,674		157,500 (8.1%)

- 세출 예산현액은 73억 1,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0.1%인 65억 9,29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6억 2,275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사용은 1건에 395만원으로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5만원임.
-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 사용은 3건에 3억 86백만원으로
 - 기본경비(주택실주택정책과) 210만원
 - 기본경비(재난안전실정책과) 210만원
 -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3억 82백만원임.
- 예산의 변경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1억 95만원으로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억 95만원임.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억 2,275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8.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비고
2024	7,316,665	622,751	8.5%	
2023	2,156,531	118,781	5.5%	
2022	1,956,174	157,500	8.1%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32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 8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 26만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사업 : 1백만원
 - 기본경비 : 23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낙찰차액 : 6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사업 : 5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 1백만원
- (건설혁신담당관) 집행잔액 : 4백만원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 3백만원
 - 공정건설문화 정착 : 1백만원
- (건설혁신담당관) 낙찰차액 : 2백만원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2백만원
- (건설혁신담당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82백만원
 -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3억 82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집행잔액 : 1억 9백만원
 -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11백만원
 -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42백만원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56백만원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62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5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24백만원
 - 기본 경비 33백만원
- (품질시험소) 낙찰차액 : 26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26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4	3,958,021	3,958,021	6,134,670	4,791,931	1,342,739		1,342,739	78.1
2023	718,314	718,314	971,245	935,470	35,775		35,775	96.3
2022	837,897	837,897	854,904	841,370	13,534		13,534	98.4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39억 5,802만원이었으나 실제 61억 3,467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수납액은 78.1%인 47억 9,193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3억 4,274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2~14)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61억 3,467만원은 예산액 39억 5,802만원의 155%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그외수입	6,400	3,310	3,310	-3,090	○ 건설기술심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로 정확한 개최횟수 예측이 불가하여 추정치로 예산액 산정
지난년도수입	21,122	37,487	21,200	16,365	○ 과태료 체납에 따라 미수납액 발생하여 추정치로 예산액 산정
기타과태료	81,479	98,005	90,727	16,526	○ 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 부터 과태료 대상 통보를 받아 부과를 시행하고 있어 정확한 예산액 산정이 어려움
건설혁신담당관					
증지수입	7,581	7,230	7,230	-351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로 3개년 평균치로 예산액 추계
지난년도수입	93,870	1,214,806	31,439	1,120,936	○ 예산액은 최근 4개년 평균부과증감률을 반영한 '24년도 세입 추계 금액, 징수결정액은 '23년도 이전까지의 누적체납액이라 차이 발생
과징금	565,125	408,063	307,121	-157,062	○ 최근 5개년 과징금 평균 부과액의 평균 징수율 반영하여 추계
기타과태료	303,704	304,194	269,329	490	○ 최근 5개년 과태료 평균 부과액의 평균 징수율 반영하여 추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타이자수입	96,453	57,589	57,589	-38,864	○ 집행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적시 반환 지체에 따른 이자액 발생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4,845	1,136,832	1,136,832	1,121,987	○ 집행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적시 반환 지체에 따라 정확한 예산액 산정이 어려움
그외수입	-	20	20	20	○ 과년도 출장비 착오(초과)지급에 대한 환수금 발생
품질시험소					
주차요금수입	8,940	10,334	10,334	1,394	○ 시험소 방문 민원인 또는 직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으로 이용자 수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
기타사용료	685	727	727	42	○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
증지수입	628,972	721,098	721,098	92,126	○ 도로포장용 아스콘 혼합물 등 시험물량 및 수리품 가스미터 재검정 건수 증가
기타이자수입	-	584	584	584	○ 기관명의 통장 발생이자 세입조치
비용품매각대금	2,500	6,073	6,073	3,573	○ 감정평가액 대비 실제 낙찰액 증가
그외수입	1,927	3,901	3,901	1,974	○ 예년 대비 수수료 높은 대형 계량기 의뢰건수 증가 등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은 건설기술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수수료 수입¹⁾으로, 예산액 64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31만원으로 309만원(△48.3%)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 이후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한 8건보다 4건([표] 참조)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024년 건설기술심의 요청에 따른 심의 건수

연번	기관	심의 내용	건수
합 계			4건
1	서울교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축차량기지 주공장 정밀안전진단 심의 ○ 4호선 미아~미아사거리역 등 4개구간 정밀안전진단 심의 ○ 2호선 낙성대~서울대입구역 등 9개구간 정밀안전진단 심의 ○ 3호선 동대입구~약수역 등 15개구간 정밀안전진단 심의 	4건

-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21년~'23년)의 평균수수료에 평균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나, 실제 심의요청 건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난년도수입**’은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중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으로, 예산액 2,112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749만원으로 1,637만원(77.5%) 증가하였음.

- 이는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23년도 최종 미수납액 503만원에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예상 과태료 1,609만원²⁾을 합산하여 추계한 것이기는 하나, 매년 큰 폭으로 변동('23년 43건→'24년 76건)되는 부가 건수로 인해 세입 예측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최종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인력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1건은 최종 수납 완료되었으나,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75건(2,240만원) 중 53건(1,629만원)은 여전히 체납 되고 있는 상황인데([표] 참조),

[표] 2024년 기술심사담당관 지난년도수입 항목별 체납액 대비 수납 현황

(’25. 5월 기준, 단위 : 천원)

지난년도수입	징수결정액(체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6	37,487	23	21,200	53	16,287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75	22,395	22	6,108	53	16,287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1	15,092	1	15,092	0	0

2) 교육 미이수 : 300건 × 214,500원 × 25% = **16,087천원**

- '23년 잔여 예상 부과건수 : 200건(도입 초기라 부과건수 예측 불가)
- 평균 부과금액 : 214,500원('23년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미징수율 : 25%('23년 4월까지의 평균 미징수율으로 산정)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는 체납금의 장기화 경향이 강한 항목이므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기타과태료’의 경우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³⁾으로 예산액 8,148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9,801만원으로 1,653만원(20.3%)이 증가하였는데([표] 참조),

[표]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b)-(a)
2024년	81,479	98,005	90,727	16,526
2023년	39,990	95,524	79,256	55,534
2022년	38,613	46,925	36,856	9,969
2021년	38,702	102,485	101,645	63,783

- 이는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18~'22년 평균, 115건)과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최근 1년, 300건)의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을 추계([표] 참조)하였으나, 실제 징수는 협회로부터 위반 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예측치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임.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표] 기술심사담당관 기타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81,479천원
 - 산출내역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 : 115건 × 281,496원 = 33,216,528원
 - ⇒ '24년 예상 부과건수 : 115건('18~'22년 부과건수 평균)
 - ⇒ '24년 예상 평균부과금액 : 281,496원(최근 5개년 최대 최소 제외하여 산출)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 300건(25건×12월) × 214,500원×75%=48,262,500원
 - ⇒ '24년 예상 부과건수 : 300건(도입 초기라 부과건수 예측 불가)
 - ⇒ 평균 부과금액 : 214,500원('23년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 징수율 : 75%('23년 4월까지의 징수율으로 산정)

○ 다음으로, 건설혁신담당관의 세입 항목 중 '지난년도수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4)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과 같은 법 제99조 및 100조5)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당해 연도에 징수(가산금 포함)하지 못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으로, 예산액 9,387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2억 15백만원으로 11억 21백만원(1,194.7%)이 증가하였음.

- 이는 예산액은 '23년 징수액 7,450만원에 최근 5개년('19~'23년)간의 연평균 부과 증가율(126%)을 반영하여 추계([표] 참조)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최근 5개년간 미수납액의 누적분 합산으로 인해 매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임.

[표] 건설혁신담당관 지난연도수입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93,870천원
- 산출내역
 - '23년 징수액 74,500천원 × 126%('19~'23 예상 평균 부과 증가율)
 - ※ 연도별 지난연도 건설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23년 예상 평균
					4월 기준	전망	
부 과 액	335,883	494,069	599,453	778,741	931,251	931,251	627,879
징 수 액	13,565	18,100	65,368	73,746	15,954	74,500	49,055
징수율(%)	4.0	3.7	10.9	9.4	1.7	7.9	7.1
부과증가율(%)	13.1	47.1	21.3	29.9	-	19.5	26.1

- 미수납액(체납액) 발생에 따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4건 12억 15백만원 중 19건(3,144만원)만 징수되어 여전히 435건 11억 83백만원이 미수납 상태([표] 참조)이며, 최근 5개년간 체납 누적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표] 참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발생현황에 따른 징수 현황

(’24. 12월 기준, 단위 : 천원)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체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54	1,214,805	19	31,439	435	1,183,366
법 제100조 과태료	423	671,241	10	5,970	413	665,271
법 제82조 과징금	26	536,064	4	17,696	22	518,095
법 제99조 과태료	5	7,500	5	7,500		

[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대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2024	1,214,805	31,439	2.59%
2023	935,871	47,510	5.08%
2022	778,741	73,747	9.47%
2021	599,453	65,369	10.90%
2020	494,070	18,101	3.66%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 납세자 재정 악화, 소송 계류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수납 저조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체납 규모가 점차 누적·가중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과 행정조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판단됨.
- 다음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입 항목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서울시가 자치구로 교부한 시비보조금(국비매칭 포함)에 대해 자치구가 사업을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서울시가 환수하는 수입으로, 예산액 1,485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1억 37백만원으로 11억 22백만원(7,658.4%) 증가하였음.
- 금회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을 크게 상회 하였는데, 이는 '24년 세입추계 당시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749만원 세입추계)과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735만원 세입추계)의 환수 예상액만을 반영하였으나([표] 참조),

[표]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사업 세수추계 산출근거

-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추계액 : 7,491천원
 - 산출내역 : 예산배정액이 늘어난 사업으로 3개년 평균 반환율이 13.6%로 확인됨에 따라 '23년예산에 반환률을 곱하여 '24년 세입 추계함
 - ➔ 55,086천원('23년 예산) × 13.6%(평균 반환율) = 7,491천원

(단위 : 천원)

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률
2020년	49,637	11,681	23.4%
2021년	49,665	6,760	13.6%
2022년	42,385	1,638	3.8%

※ 평균 반환율 : 13.6%

[표]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세수추계 산출근거

-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3년 전망액 : 7,354천원
 - 산출내역 : '22년 25개 자치구 지원 보조금 정산 결과

- 당시 세입추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환수금 10억 89백만원 등이 추가로 징수결정되었기 때문으로,
- 이는 '22년 예산편성 당시 자치구가 제출한 동 사업의 수요조사 규모(국비 51억 6천만원 : 시비 29억 79백만원)와 실제 집행실적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에 매칭되는 대규모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억 17백만원 또한 환수하여 중앙정부에 반납⁶⁾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추후 국고보조금 교부 시 감액 또는 보조율 조정 등 불이익으로

6)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익년도~3월) 일정에 따라 반환 추진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자치구의 사업 집행 역량 및 과거 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수요와 집행간 일치할 수 있도록 교부예산 편성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증지수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⁷⁾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⁸⁾ 등에 근거한 건설공사 품질점검(자재시험 포함)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이며, 예산액 6억 2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7억 21백만원으로 9,212만원(14.6%) 증가하였음.
- 이는 건설자재품질시험 의뢰 건수('23년 대비 44.8%↑)와 각종계량기 검정 건수('23년 대비 17.8%↑) 등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른 것임.
- ‘불용품매각대금’은 품질시험소의 공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차량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⁹⁾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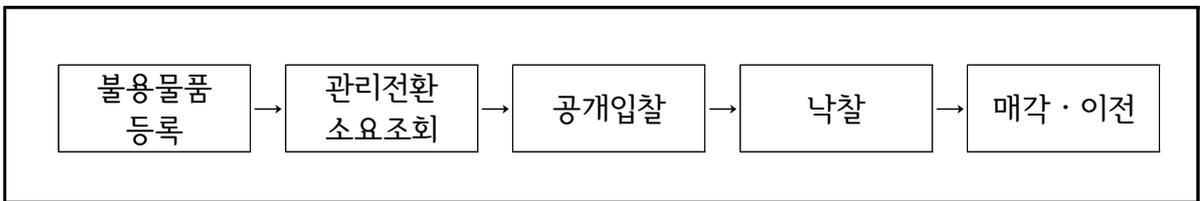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¹⁰⁾에 따라 공개 매각¹¹⁾한 대금을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예산액 25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07만원으로 357만원(142.8%)이 증가하였음.

[표] 매각 불용차량 내역

차명	배기량 및 사용연료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사용년월)	내구연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1,591CC/LPG+전기	64어2038	2012.12.18. (10년 5월)	10년

[표] 불용물품 매각절차



- 이는 예산편성 당시 동종 연식 차량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¹²⁾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매각 시 낙찰금액이 감

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공개 매각

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1. 유사 점정평가사례

기호	차명	연식	주행거리(km)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평가목적
1	아반떼하이브리드	2010	120,943	2021.04.08.	2,500,000	최득처분(매입, 매각)
2	아반떼 하이브리드	2011	28,389	2023.03.17.	3,000,000	공매

정가를 초과하면서 매각 대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 최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중고차 시장에서의 공공차량 수요 증가 등으로 낙찰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유사 사례의 예산편성 시에는 사회적 수요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53)

- 건설기술정책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 3,578만원 대비 13억 695만원 증가한 13억 4,273만원으로 이는 '24.7월 실시한 조직개편¹³⁾에서 재난안전실의 건설혁신담당관이 건설기술정책관 산하로 이관되면서,
- 세입 항목의 미수납액이 통합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지난연도수입 11억 99백만원, 과징금 1억 94만원, 기타과태료 4,214만원임([표] 참조).

[표] 건설기술정책관 미수납액 징수 현황

(’25.5월 기준, 단위 : 천원)

세 목	부 과		미수납액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24.12.31일)		'25.5월 기준 미수납액 현황	
	건수	징수결정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99	2,062,555	566	1,342,739	533	1,258,578
지난연도수입	530	1,252,293	488	1,199,655	474	1,146,746
과징금	27	408,063	9	100,942	7	76,502
기타과태료	842	402,199	69	42,142	52	35,330

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이 중 ‘지난연도수입’은 전체 미수납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체납 건이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초기 체납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미수납 사유별 현황([표] 참조)을 살펴보면 ‘기타’¹⁴⁾ 사유가 전체의 68.8%(9억 23백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를 보다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 체납 사유를 보다 정밀하게 분류하여 사유별로 징수 가능 전략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24. 12월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세입목	미수납액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납기미도래
합 계		1,342,739	373,597	923,422	45,720
기술심사담당관	소계	23,566	0	23,316	250
	지난연도 수입	16,288	0	16,288	0
	기타과태료	7,278	0	7,028	250
건설혁신담당관	소계	1,319,173	373,597	900,106	45,470
	지난연도 수입	1,183,367	370,363	813,004	0
	과징금	100,942	0	76,502	24,440
	기태과태료	34,864	3,234	10,600	21,030

14)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2024.1.22.시행)

사. 결산서 첨부서류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회생절차,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 이주, 자금압박, 기타 구분 작성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4	1,046,663	-	-	-	3,949	-	1,046,663	1,008,797	-	37,866 (3.6%)
2023	870,261	-	-	-	-	-	870,261	824,343	-	45,918 (5.3%)
2022	758,009	-	-	-	-	-	758,009	694,535	-	64,474 (8.4%)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10억 4,666만원으로 이 중 96.4%인 10억 880만원을 지출하고 3.6%인 3,786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 (결산서 p.15~17)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0억 4,666만원 대비 3.6%인 3,786만원으로 작년 대비 1.7%p 감소(5.3%→3.6%)하였음.

[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74,465	8,100	1.7

2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32,847	263	0.8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2,915	3	0.0
4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사업	90,000	5,602	6.2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2,389	1,047	2.0
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243,941	-	0.0
7	기본경비	140,106	22,851	16.3
	합 계	1,046,663	37,866	3.6

- 먼저,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9,000만원 중 8,440만원을 지출하고 6.2%인 5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서
2024	90,000	88,964(98.9%)	84,398	94.9%	6개 기관 6개 부서
2023	90,000	90,000(100.0%)	84,866	94.3%	9개 기관 9개 부서
2022	90,000	86,833(96.5%)	79,941	88.8%	8개 기관 10개 부서

- 동 사업의 경우 총 26건의 사업에 공무원 직접 설계를 유도하여 외주용역 시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억 27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표] 참조)를 나타냈고,
- 실무담당 공무원의 설계 경험 축적 및 업무역량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바, 지속적인 사업 확대

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여 가야 할 것임.

[표]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배정금액	집행금액	외주용역예상금액	절감액
	계		88,964	84,398	1,316,842	1,227,878
1	서울시립대학교(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2,950	12,279	72,431	59,481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등 2건	12,232	11,930	23,285	11,053
3	노원구(푸른도시과)	2024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상계동 1239-1 등 2개소) 등 7건	18,739	18,676	36,757	18,018
4	동대문구(치수과)	사가정로 206일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6건	16,401	14,375	464,588	448,187
5	종로구(치수과)	북악스카이웨이 빗물유입수로관 정비 등 3건	8,936	8,615	199,868	190,932
6	중랑구(치수과)	숙선옹주로3길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7건	19,706	18,523	519,913	500,207

○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산현액 1억 4천만원 중 1억 17백만원을 지출하고 16.3%인 2,285만원을 불용하였음.

- 주된 불용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 예산과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¹⁵⁾ 등에 따라 국내 여비를 일괄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나, 실제 출장 수요와 집행금액([표] 확인)이 이에 미치지 못해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 실수요가 예산 추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수요 기반의 탄력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5)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표] '24년 기술심사담당관 대비 '25년 건설기술정책관 국내여비 예산편성 현황

◆ 2024년 서울시 예산과 기술심사담당관 국내여비 배정(편성) 현황 ⇒ 35인(정원) × 1,400천원 (관내 월5회 출장,관외 200천원) = 49,000천원
◆ 2025년 서울시 예산과 건설기술정책관 국내여비 배정(편성) 현황 ⇒ 82인(정원) × 1,400천원 (관내 월5회 출장,관외 200천원) × 50% = 57,400천원 ※ 반영률(50%)은 최근 3년간 국내여비 평균 집행액을 고려하여 산정 ※ '25년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포함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결산서 p.26~p29)

- 예산의 전용¹⁶⁾은 총 1개 사업으로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동일 세부 사업 내 사무관리비 395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	기술심사 담당관	총 1건		395,807	3,949	3,949	2024-09-10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부서의 증가로 기간제근로자(초단 시간근로자) 보수의 부족분 발생
		건설기술 심의회	201-01 사무관리비	387,910	3,949	-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7,897	-	3,949		

- 이는 '24.7.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의 건설혁신담당관이 건설기술정책관 산하로 이관되면서, 기존 재난안전실에서 지급하던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보수를 주무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이 일괄 편성·집행(기존 1명→2명)하게 되어 이에

16)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따른 증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한 것임.

- **예산의 이체**¹⁷⁾는 총 3개 사업으로 이 중 2건은 '24.7.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재난안전실 건설혁신담당관이 건설기술정책관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또한 각각 210만원씩 이체된 것이며,
 - 나머지 1건 또한 조직개편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었던 '서울특별시 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 건설혁신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3억 82백만원이 함께 이체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386,200	386,200		
1	기술심사 담당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9,600	-	2,100	2024-07-08	2024. 7.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
	주택실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75	2,100	-		
2	기술심사 담당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700	-	2,100	2024-07-16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8,700	2,100	-		
3	기술심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382,000	382,000	-	2024-07-08	
	건설혁신 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	-	382,000		

17)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건설혁신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4	648,151	-	-	-	-	-	648,151	259,584	-	388,567 (60.0%)
2023	508,223	-	-	-	-	-	508,223	471,439	-	36,784 (7.2%)
2022	153,756	-	-	-	-	-	153,756	147,911	-	5,845 (3.8%)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6억 4,815만원으로 이 중 40%인 2억 5,958만원을 지출하고 60%인 3억 8,857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18~p19)

- 건설혁신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억 4,815만원 대비 60%인 3억 8,857만원으로 작년 대비 52.8%p 증가(7.2%→60%)하였음.

[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58,076	3,149	5.4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000	166	0.7
3	공정건설문화 정착	25,500	1,138	4.5
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2,324	2,114	2.1

5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382,000	382,000	100.0
6	기본경비	56,251	-	0.0
	합 계	648,151	388,567	60.0

- 먼저,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금회 예산현액 5,808만원 중 5,493만원을 지출하고 5.4%인 315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비 집행잔액에 해당함.
 -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는 현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용역(141만원), 외부전문가 수당(238만원), 협의회 운영비 일부(45만원) 및 기타 소모품비 등이 집행되지 않아 총 296만원이 불용된 것이며, 기타보상비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중 일부인 18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 처리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예산 집행잔액 항목별 상세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
계	58,076	54,926	3,149	
사무관리비	37,276	34,313	2,963	현장이해관계 설문조사 집행 잔액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9,989	11	
기타보상비	800	624	176	포상금 지급 후 잔액
포상금	10,000	10,000	0	24년 공정한도급 우수기관 평가 포상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18)에 따라 하자검사 소홀 및 담보책임기간 경과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자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금회 예산현액 3억 82백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조항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청 시설물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관리청 시설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7. 그 밖에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 사업은 당초 별도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하자관리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비용 및 효율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18)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76호, 2023. 10. 4., 제정]

- 서울시는 e-호조가 기본적인 시설공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가 입력 없이 하자관리 기능 구현이 가능하고 신규 구축비 외에도 연간 유지관리 비용(5,700만원 추정)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 활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임.
- 동 불용은 결과적으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지양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한 사례로, 향후 e-호조와의 연계가 조례상 기능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결산서 p.26~p29)

- 예산의 이체¹⁹⁾는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설명한 ‘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억 82백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혁신담당관으로 이체한 것으로 동일 사안임.

[표]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	총 1건				382,000	382,000	2024-07-08	2024. 7.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예 따른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
	기술심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382,000	382,000	-		
	건설혁신 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	-	382,000		

19)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4	4,116,265	-	-	-	-	-	4,116,265	3,906,571	-	100,946	108,748 (2.6%)
2023	2,238,432	3,317,868	-	-	-	-	5,556,300	2,210,097	2,017,419	-	1,328,784 (23.9%)
2022	9,961,507	-	-	-	-	-	10,123,977	6,372,029	96,335	3,317,868	337,745 (3.3%)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41억 1,627만원으로 이 중 94.9%인 39억 657만원을 지출하고 2.6%인 1억 87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억 95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음.

나) 집행잔액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1억 1,627만원 대비 2.6%인 1억 875만원으로 작년 대비 21.3%p 감소(23.9%→2.6%)하였음.

[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278	54	0.2
2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70,300	109	0.2

3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05,250	10,565	5.1
4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23,850	700	0.6
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35,000	70	0.2
6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000,000	41,717	4.2
7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28,811	55,462	24.2
8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79,946	-	0.0
9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6,000	-	0.0
10	기본경비	27,530	71	0.3
11	국고보조금 반환	2,207,300	-	0.0
	합 계	4,116,265	108,748	2.6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은 민간 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 등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모바일 시스템²⁰⁾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29백만원 중 1억 64백만원을 집행하고 24.2%인 5,546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2년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23년까지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무상 유지 보수기간 종료에 따라 '24년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표] 참조) 하였으나,

20)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2. 8. 31., 용역사: 우대칼스)

○ 시스템 개요

-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 담당공무원 : <https://www.3s.eseoul.go.kr> / 건축안전자문단 : <https://www.3sa.eseoul.go.kr>
- 공사관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 <https://www.3sc.eseoul.go.kr>

○ 시스템 내용구성

- (안전점검) 모바일 활용한 공사장, 노후건축물, 주택사면 안전점검·이력관리
- (공사관리)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사장 인허가 사항 안전관리에 활용
- (자문단관리) 분야별 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현황관리

[표] 2024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항목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내용
계	228,811	
사무관리비	1,500	- 위원회 수당 및 매뉴얼, 리플릿 제작
공공운영비	227,311	- 시스템 유지보수 : 107,670천원 · 건축안전관리시스템 : 51,668천원 · 시각지능시스템 : 56,002천원 - 인터넷, VPN 등 통신요금 : 119,641천원

- 당초 용역 대상에 포함되었던 ‘시각지능시스템’ 기능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가 예산 편성 이후인 '24.1월부터 추가 2년간의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24년 용역 계약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전체 용역비가 감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음.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불용율)
2024	1,505,586	-	-	-	-	-	1,505,586	1,418,017	-	87,569 (5.8%)
2023	1,286,270	-	-	-	-	-	1,286,270	1,213,407	-	72,863 (5.7%)
2022	1,165,980	32,185	-	5,049	-	-	1,198,165	1,104,139	-	94,026 (7.8%)

가) 개요

- 예산현액은 15억 559만원으로 이 중 94.2%인 14억 1,802만원을 지출하고 5.8%인 8,757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5억 559만원 대비 5.8%인 8,757만원으로 작년 대비 0.1%p 증가(5.7%→5.8%)하였음.

[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285,345	4,660	1.6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8,580	30	0.3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806,499	49,704	6.2
4	기본경비	405,162	33,175	8.2
	합 계	1,505,586	87,569	5.8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는 청사 내 청결 유지 및 근무환경 개선,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6백만원 중 7억 65백만원을 사용하고 6.2%인 4,970만원을 불용하였음.

- 주요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2,569만원과 지출잔액 2,401만원이며, 이 중 지출잔액은 대부분 품질시험소 청사 내 기간제근로자(촉탁계약직 3명)²¹⁾의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실제 근무보다 적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표] 참조).

[표]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 항목 중 기간제근로 보수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통계목	세세부 항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기간제근로자 보수	합 계	151,435	127,565	23,870	
	○ 기본급	84,054	80,280	3,774	- 집행잔액
	○ 명절휴가비	7,005	6,690	315	- 집행잔액
	○ 수당	49,650	31,595	18,055	- 시간외 및 휴일근무 사유 일부미발생
	○ 기타경비	10,726	9,000	1,726	- 집행잔액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21) ‘촉탁계약직 관리 운영 지침’ 노동정책담당관-30717호(’22.12.14.)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촉탁계약직은 고령자 적합 업무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직종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만60세)이후 재고용하여 만65세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승계한 직종을 의미함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